#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206

발의연월일: 2022. 11. 10.

발 의 자:한기호·권명호·김도읍

김성원 · 노용호 · 안규백

유의동 • 이양수 • 임병헌

지성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도 도입 당시 예상된 연간 약 1,000건의 심사를 전제로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 소위원회 구성을 감안하여 구성한 결과임.

그런데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소위원회가 의결권이 없는 '사전심사위원회'로 그 기능 몇 명칭이 수정되어 현재 대체역 편입에 대한 의결은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전원회의)에서 전담하고 있음. 위원 29명의 동시 심사 참여는 효율적 의사 진행, 충분한 의견 제시, 균형적 의사 교환 등이 곤란하여 회의 운영의 비효율성과 함께 심층 심사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29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 법률 제 호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9명의 위원"을 "11명의 위원"으로, "5명 이내"를 "3명이내"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5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명"을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4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29명</u>	<u>11명의</u>
<u>의 위원</u> 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	위원
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u>5명 이내</u>	<u>3</u> 명 이내
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3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	
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	
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상	
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	
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	1
하는 사람 <u>5명</u>	<u>2명</u>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	2 <u>2</u>
<u>명</u>	<u>명</u>
3.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	3 <u>3</u>
<u>명</u>	<u>명</u>
4.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u>5명</u>	4 <u>2명</u>